

무배당 하나 신탁제공용 이올보증형
퇴직연금보험

확 인 서

무배당 하나 신탁제공용 이율보증형 퇴직연금보험을 개정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23년 07월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곽 상 현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하나 신탁제공용 이올보증형 퇴직연금보험

2. 사업경영의 지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생활하는 전 지역으로 한다.

3.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신탁업자로 한다.

4. 보험종목의 세목

가. 거치식_이올보증형(이올보증기간 : 1년, 2년, 3년, 5년)

나. 자유적립식_이올보증형(이올보증기간 : 1년, 2년, 3년, 5년)

5. 이올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올은 이올보증형 공시이올(이하 “공시이올”이라 한다)로 한다.

구 분	공시이올
거치식_이올보증형(이올보증기간 : 1년)	거치식_1년 이올보증형 공시이올
거치식_이올보증형(이올보증기간 : 2년)	거치식_2년 이올보증형 공시이올
거치식_이올보증형(이올보증기간 : 3년)	거치식_3년 이올보증형 공시이올
거치식_이올보증형(이올보증기간 : 5년)	거치식_5년 이올보증형 공시이올
자유적립식_이올보증형(이올보증기간 : 1년)	자유적립식_1년 이올보증형 공시이올
자유적립식_이올보증형(이올보증기간 : 2년)	자유적립식_2년 이올보증형 공시이올
자유적립식_이올보증형(이올보증기간 : 3년)	자유적립식_3년 이올보증형 공시이올
자유적립식_이올보증형(이올보증기간 : 5년)	자유적립식_5년 이올보증형 공시이올

나. 공시이올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1) 공시이올은 단위보험 설정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올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한다.

[확정급여형]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여 매월 1일 적용하고, 각 단위보험 설정일에 시장상황 및 회사손익 등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공시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확정기여형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회사는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여 매월 1일 적용하고, 각 단위보험 설정일에 시장상황 및 회사손익 등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시 공시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공시이율은 산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2) 공시기준이율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거치식_1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자유적립식_1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circ \text{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 A1 : 국고채(1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1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 A3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의 평균값

[거치식_2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자유적립식_2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circ \text{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 A1 : 국고채(2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2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 A3 : 통화안정증권(2년) 수익률의 평균값

[거치식_3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자유적립식_3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circ \text{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 A3 : 통화안정증권(3년) 수익률의 평균값

[거치식_5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자유적립식_5년 이율보증형 공시기준이율]

$$\circ \text{공시기준이율}(\%) = \frac{A1 + A2 + A3}{3}$$

- A1 :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5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 A3 : 통화안정증권(5년) 수익률의 평균값

- (주)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한다.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무보증회사채(AA-)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한다.

3.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산출 적용한다.
4. 평균값은 산출일로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5번째 영업일로부터 14번째 영업일까지 10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출 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5.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는 시점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장지표가 되는 다른 수익률(예, 시가평가기준수익률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공시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동안 확정 적용한다.

(4) 설정된 단위보험에 적용되는 이율에 대한 최저보증은 없다.

(5) 향후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방식 변경시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3)의 적용기간 이후부터 변경된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다. 회사는 년2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함)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한다.

라. 세부적인 공시이율 운영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영지침을 따른다.

6. 보험기간, 보험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때부터 계약의 해지일까지를 말한다.

나. 보험료

보험료는 1만원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다. 납입기간

전기납

라. 수금방법

금융기관을 통한 납입 등

7. 해약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해약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 제14조(해약환급금)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8. 청약서 등의 서식

가. 청약서의 서식은 별첨 제1호의 서식으로 한다.

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서식은 별첨 제2호의 서식으로 한다.

9.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 없음

10.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설정

이 보험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나.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그 관계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라.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1) 보험료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계약자의 지급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① 해약환급금 또는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②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③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의 계정간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1. 계약자적립액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2. 운용에 관한 사항

- 가. 거치식_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거치식_이율보증형을 선택하고 납입되는 보험료 또는 이전되는 단위보험의 계약자적립액으로 설정된 구좌를 말하며, 각 단위보험마다 확정된 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한다. 계약자는 각 보험료 납입시 「4. 보험종목의 세목」에서 정한 거치식_이율보증형의 이율보증기간 중에서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한다. 계약자적립액은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회사가 공시한 거치식_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이율보증기간동안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나. 자유적립식_이율보증형의 단위보험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자유적립식_이율보증형을 선택하고 최초보험료 납입 시 또는 단위보험의 계약자적립액 이전 시 설정된 구좌를 말하며, 단위보험에 확정된 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한다. 계약자는 위 보험료 납입시 「4. 보험종목의 세목」에서 정한 자유적립식_이율보증형의 이율보증기간 중에서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하며, 이율보증기간동안 자유롭게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계약자적립액은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회사가 공시한 자유적립식_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납입시점부터 이율보증기간 종료일까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다.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종료시점에 도달한 단위보험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중도해지한 단위보험의 해약환급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항 내지 나항을 준용한다. 다만, 자산기관의 관리번호(DC 형의 경우 가입자번호)별로 자유적립식_이율보증형 단위보험이 이미 설정된 경우 자유적립식_이율보증형 단위보험은 추가로 설정할 수 없으며, 거치식_이율보증형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종료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계약자적립액 또는 중도해지한 단위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이미 설정된 자유적립식_이율보증형 단위보험으로 이전할 수 있다.
- 라. 다항에도 불구하고 각 단위보험별로 해당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종료일까지 새로운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만기상환한다.
- 마. 라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각 단위보험별로 해당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종료일까지 새로운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단위보험 이율보증기간 종료시점에 해당 단위보험의 계약자적립액으로 해당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 및 보험종목의 세목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을 자동 설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공시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에 회사가 공시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및 보험종목의 세목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 공시이율로 한다.
- 바.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에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계약자적립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한다. 이 때,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각 단위보험에 적용된 이율보증형 공시이율×50%로 한다. 다만, 약관 제14조(해약환급금)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해당 단위보험의 계약자적립액계산시 적용한 이율을 적용한다.
- 사. 자유적립식_이율보증형 단위보험의 경우 이율보증기간의 3분의 2 경과시부터 이율보증기간 종료일까지(이하 '납입보험료 제한기간'이라 한다)의 납입 및 이전금액의 한도는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납입보험료 제한기간 시작일 전일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50%로 한다.

13. 기타 사항

가. 이 보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에게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 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상품운영 및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별첨 제1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2호)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서식